

# 추진실적

**2011** 조사건수(면적) : 총51건(4,113ha)  
적합 : 42건 (3,224ha, 78%), 부적합 : 9건(889ha, 2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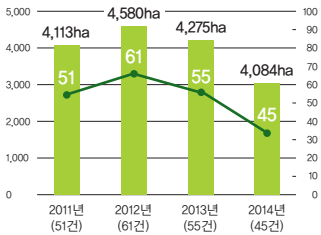
**2012** 조사건수(면적) : 총61건(4,580ha)  
적합 : 55건 (4,016ha, 88%), 부적합 : 6건(564ha, 12%)

**2013** 조사건수(면적) : 총55건(4,275ha)  
적합 : 45건 (3,434ha, 80%), 부적합 : 10건(840ha, 2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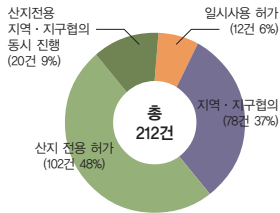
**2014** 조사건수(면적) : 총45건(3,084ha)  
적합 : 38건 (2,514ha, 82%), 부적합 : 7건(570ha, 18%)

**2011~2014** 조사건수(면적) : 총212건(16,052ha)  
적합 : 180건 (13,188ha, 82%), 부적합 : 32건(2,864ha, 1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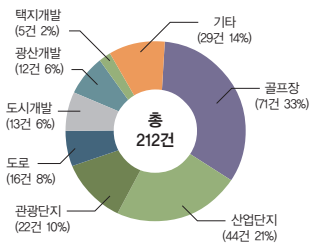
## ■ 연도별 조사현황 (2011~2014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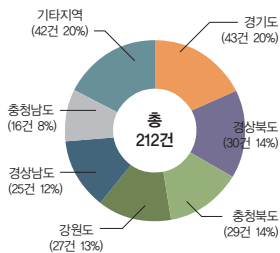
## ■ 신청유형별 조사현황 (2011~2014)



## ■ 사업유형별 조사현황 (2011~2014)



## ■ 지역별 조사현황 (2011~2014)



# KOREA FOREST CONSERVATION ASSOCIATION

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조사본부



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86 신흥빌딩 5~7층  
TEL : 02-2058-3700 FAX : 02-2058-3705  
산지전용타당성조사 : 02-2058-3704

[www.kfca.re.kr](http://www.kfca.re.kr)



# 한국산지보전협회

KOREA FOREST CONSERVATION ASSOCIATION

## 설립배경

2004년 3월 15일 세계 산의 해를 맞이하여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명시된 산림청 특수법인입니다.

## 설립목적

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정책·제도의 조사·연구 및 교육·홍보 등과 산사랑 국민운동을 통해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

### 미션

산지의 보전 & 산림자원 육성 위한 정책지원 및 공공서비스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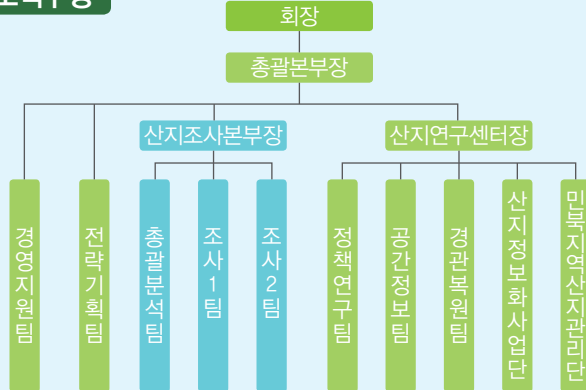
### 비전

산지의 보전가치 증진 및 기술과 제도를 선도하여 국민에게 신뢰 받는 산지관리 전문기관

## 연혁

- 2004. 3 창립총회 개최
- 2004. 4 법인설립인가
- 2011. 4 지역협회 본회 통합
- 2011. 7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실시
- 2013. 8 산지연구센터 설립
- 2014. 3 창립10주년기념 비전선포

## 조직구성



# 산지조사본부 주요사업

## 산지전용타당성조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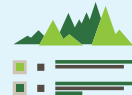
-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술개발 및 현장조사인력 양성에 선도적 역할 수행
- 선진화된 검증체계운영, 조사장비와 데이터 처리체계 과학화 등으로 산지조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 경주

##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의 타당성조사



-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(12.4.5시행) 제9조에 따라 3ha 이상으로 사업구역을 정하여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적용
- 한국산지보전협회로부터 생태적 산지전용 지구지정의 타당성조사를 받은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제도

## 일반산림조사



- 2011년~2014년 동안 총 212건(16,052ha)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30ha미만의 일반산림조사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
- 최첨단 측정 장비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확한 조사·분석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신력있는 결과 산출



# 산지전용타당성조사

## 산지전용타당성조사란?

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30ha 이상의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,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·적합성·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조사입니다.



##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

- 산지관리법 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
-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-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## 조사 절차 (처리기간 : 90일)



## 조사항목

산지에서의 구역 지정 협의 신청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전산지 등의 편입</li> <li>-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</li> <li>- 인근 산림 경영·관리에 대한 영향</li> <li>- 산지의 평균 경사도</li> <li>-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</li> <li>- 보전산지 편입비율</li> </ul>
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전산지(공익용산지, 임업용산지)등에 대한 행위제한</li> <li>- 인근 산림 경영·관리에 대한 영향</li> <li>- 우량한 산림의 편입</li> <li>- 재해발생 우려</li> <li>-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</li> <li>-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의 편입</li> <li>- 사업계획 및 전용면적·방법의 적정성</li> <li>- 공장·도로(산지전용)</li> <li>- 대상시설·행위별 지역·조건·기준(산지일시사용)</li> </ul>